



제 971 호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1-	3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간석동8-2번지공영주차장)실시계획 인가를 위한공고,열람 알림 공고		2
○ 공고	제2011-	353호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4
○ 공고	제2011-	355호	행정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5
○ 공고	제2011-	3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공고·열람 공고		15
○ 공고	제2011-	3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25
○ 공고	제2011-	382호	소액수의(수목구입)견적제출 안내공고		37
○ 공고	제2011-	3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9
○ 보건소 공고	제2011-	13호	재가암관리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51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남동구 고시 제2006-10호(2006. 3.17)로 시설결정 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683) 및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사업시행구간 내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간석동 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규 모	
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 6면 면적(A) : 176.1㎡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2.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용지 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지 장 물 조 서

공 사 명 : 간석3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번 호	소 재 지		용 도	구 조	수 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명	지 번				성 명	주 소	취득일자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간석동	8-2	사무실	컨테이너 5.0m × 2.4m	1EA	윤성상	미상	미상	-	-	-	-

용 지 조 서

공사명 : 간석3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총 괄 표

번 호	소 재 지			면적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고
	동 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대 지	도 로	소계	성 명	주 소	
1	간석동	8-2	대	176.1	176.1	176.1	-	176.1	건설 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합 계				176.1	176.1	176.1	-	176.1			

■ 소유자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간석3동	국유지	1	176.1	176.1	-	
합 계		1	176.1	176.1	-	

■ 지 목 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간석3동	대 지	1	176.1	176.1	-	
합 계		1	176.1	176.1	-	

■ 사용현황별

동 명	구 분	필지수	공부면적(㎡)	사용면적(㎡)	기타면적(㎡)	비고
간석3동	대 지	1	176.1	176.1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53호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융자규모 : 연 70억원
2.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써 업력 만2년이상, 전업을 40% 이상, 부채비율 1,000% 미만인 사업장, 남동구 및 인천시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또는, 대출받은 경우 대출전액을 상환 완료한 기업
3. 융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이내/업체
 - 대출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상환)
 - 이자지원 : 연3.0%
 - 취급은행별 대출금리

은행명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보증서(區 지원)	부동산(區 지원)
중소기업은행	시중금리	연10.0%(3.0%)	연10.0%(3.0%)
신한은행		연8.0%(3.0%)	연9.0%(3.0%)
국민은행		연7.9%(3.0%)	연8.7%(3.0%)
한국씨티은행		연10.0%(3.0%)	연10.0%(3.0%)

※ ()안은 남동구 이자지원금리

4.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 2011. 3. 10 ~ 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남동구청 경제지원과

○구비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최근2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표창)증빙서류사본 각1부

5.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6. 문의안내

○남동구청 경제지원과(☎453-2693)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55 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1047호, 2011.02.17.공포)에 의거 우리 구 고잔동의 토지 일부가 논현동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1.03.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03.14. ~ 2011.03.25.

2. 지적공부 작성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법정동	지번수	면적(㎡)	법정동	지번수	면적(㎡)	
행정관할구역변경	고잔동	167	1,676,074	논현동	167	1,676,074	지 번 별 변경조서 별 첨

3. 지적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 453-2462)

4. 알림사항

행정관할 구역변경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 번 별 조 서(행정관할구역변경)

토지이동종목 : 행정구역변경(고잔동→논현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유 자		비 고 (사업지구명)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m²)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m²)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	전	212	논현동	732-1	전	212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2	고잔동	2	답	4,145	논현동	732-2	답	4,145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3	고잔동	3	답	248	논현동	732-3	답	248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4	고잔동	4	답	1,745	논현동	732-4	답	1,745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5	고잔동	5-1	답	4,289	논현동	732-5	답	4,289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6	고잔동	6	전	358	논현동	732-6	전	358	주식회사신한은행외 2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7	고잔동	7-1	답	949	논현동	732-7	답	949	주식회사신한은행외 2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9번길 20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8	고잔동	산26-1	임	52,869	논현동	산106-1	임	52,86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	고잔동	산38-3	임	76,548	논현동	산106-2	임	76,54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	고잔동	산46-3	임	179	논현동	산106-3	임	17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	고잔동	산46-4	임	2,528	논현동	산106-4	임	2,528	주식회사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	고잔동	산46-5	임	325	논현동	산106-5	임	325	주식회사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	고잔동	산46-6	임	46,875	논현동	산106-6	임	46,87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외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	고잔동	산56	임	496	논현동	산106-7	임	49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	고잔동	산58-4	임	298	논현동	산106-8	임	29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	고잔동	산58-6	임	119	논현동	산106-9	임	119	주식회사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7	고잔동	산58-7	임	39,088	논현동	산106-10	임	39,08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8	고잔동	산63-2	임	3	논현동	산106-11	임	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9	고잔동	산66-1	임	751	논현동	산106-12	임	75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0	고잔동	산70-3	임	93,310	논현동	산106-13	임	93,3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1	고잔동	산71-1	임	1,091	논현동	산106-14	임	1,091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2	고잔동	산71-4	임	2,677	논현동	산106-15	임	2,677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3	고잔동	산72-1	임	992	논현동	산106-16	임	99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4	고잔동	5-7	답	7,123	논현동	733-1	답	7,12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5	고잔동	6-1	전	1,334	논현동	733-2	전	1,33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6	고잔동	7-4	답	5,933	논현동	733-3	답	5,933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7	고잔동	8-1	전	3,855	논현동	733-4	전	3,85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8	고잔동	9-1	전	4,165	논현동	733-5	전	4,165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29	고잔동	9-4	대	3,965	논현동	733-6	대	3,96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0	고잔동	10	장	27,221	논현동	733-7	장	27,22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1	고잔동	17-5	장	1,402	논현동	733-8	장	1,40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2	고잔동	21-1	대	171,887	논현동	733-9	대	171,887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3	고잔동	21	잡	5,546	논현동	733-10	잡	5,54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4	고잔동	22-1	장	4,628	논현동	733-11	장	4,62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5	고잔동	46	잡	9,828	논현동	733-12	잡	9,82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6	고잔동	47	대	44,473	논현동	733-13	대	44,473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7	고잔동	56-1	대	2,609	논현동	733-14	대	2,60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8	고잔동	67-6	임	290	논현동	733-15	임	29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39	고잔동	73-2	대	538	논현동	733-16	대	53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외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0	고잔동	129-6	대	7,428	논현동	733-17	대	7,42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1	고잔동	131-1	임	10,476	논현동	733-18	임	10,47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2	고잔동	133-1	전	517	논현동	733-19	전	51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3	고잔동	133-4	전	495	논현동	733-20	전	49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4	고잔동	133-6	도	88	논현동	733-21	도	8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5	고잔동	133-7	전	390	논현동	733-22	전	39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6	고잔동	138-5	도	200	논현동	733-23	도	20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7	고잔동	138-9	도	1,240	논현동	733-24	도	1,24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8	고잔동	138-25	도	6	논현동	733-25	도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9	고잔동	138-26	도	30	논현동	733-26	도	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0	고잔동	152-4	전	16	논현동	733-27	전	1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1	고잔동	153-1	임	132	논현동	733-28	임	13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2	고잔동	153-3	잡	3,365	논현동	733-29	잡	3,36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3	고잔동	153-4	도	321	논현동	733-30	도	32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4	고잔동	154-2	대	526	논현동	733-31	대	52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5	고잔동	154-3	도	508	논현동	733-32	도	508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6	고잔동	154-4	도	783	논현동	733-33	도	78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7	고잔동	154-6	대	3,971	논현동	733-34	대	3,97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8	고잔동	154-7	잡	694	논현동	733-35	잡	69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9	고잔동	154-8	도	417	논현동	733-36	도	41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0	고잔동	154-9	잡	596	논현동	733-37	잡	59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1	고잔동	154-10	대	1,208	논현동	733-38	대	1,20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2	고잔동	154-11	도	31	논현동	733-39	도	31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3	고잔동	154-12	대	87	논현동	733-40	대	8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4	고잔동	154-13	대	37	논현동	733-41	대	3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5	고잔동	154-14	대	17	논현동	733-42	대	1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6	고잔동	154	대	220	논현동	733-43	대	22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7	고잔동	347-1	대	3,752	논현동	733-44	대	3,75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8	고잔동	374-1	대	22,883	논현동	733-45	대	22,88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69	고잔동	391	대	24,506	논현동	733-46	대	24,50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0	고잔동	397-1	잡	7,534	논현동	733-47	잡	7,53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1	고잔동	401	잡	767	논현동	733-48	잡	76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2	고잔동	402	대	565	논현동	733-49	대	56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3	고잔동	404	임	20,298	논현동	733-50	임	20,29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4	고잔동	409-1	대	145,136	논현동	733-51	대	145,13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5	고잔동	409-2	유	2,767	논현동	733-52	유	2,76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6	고잔동	409-10	도	661	논현동	733-53	도	66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7	고잔동	409-11	장	1,096	논현동	733-54	장	1,09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8	고잔동	411-1	대	770	논현동	733-55	대	77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79	고잔동	418	유	16,648	논현동	733-56	유	16,64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0	고잔동	431-4	대	2,410	논현동	733-57	대	2,4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1	고잔동	431-10	도	506	논현동	733-58	도	506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2	고잔동	431-12	도	7,197	논현동	733-59	도	7,197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3	고잔동	431-13	잡	3,657	논현동	733-60	잡	3,65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4	고잔동	431	잡	148,117	논현동	733-61	잡	148,11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5	고잔동	438	대	40,023	논현동	733-62	대	40,02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6	고잔동	440-2	대	19	논현동	733-63	대	19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7	고잔동	440-3	대	401	논현동	733-64	대	401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8	고잔동	440-4	대	32,632	논현동	733-65	대	32,63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89	고잔동	441-4	천	3,088	논현동	733-66	천	3,08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0	고잔동	442-2	도	243	논현동	733-67	도	243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1	고잔동	442-3	잡	726	논현동	733-68	잡	726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2	고잔동	442-4	대	158	논현동	733-69	대	15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3	고잔동	442-5	유	394	논현동	733-70	유	39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4	고잔동	442-6	답	152	논현동	733-71	답	15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5	고잔동	442-7	답	142	논현동	733-72	답	14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6	고잔동	442-8	잡	3,673	논현동	733-73	잡	3,67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7	고잔동	442-10	도	51	논현동	733-74	도	51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8	고잔동	442-11	도	2,530	논현동	733-75	도	2,530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99	고잔동	442	잡	40,079	논현동	733-76	잡	40,07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0	고잔동	446-1	잡	1,574	논현동	733-77	잡	1,57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1	고잔동	448-1	천	7,828	논현동	733-78	천	7,82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2	고잔동	460-5	전	4,251	논현동	733-79	전	4,25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3	고잔동	465-3	잡	1,740	논현동	733-80	잡	1,74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4	고잔동	465-4	잡	1,041	논현동	733-81	잡	1,04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5	고잔동	467	잡	3,028	논현동	733-82	잡	3,02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6	고잔동	500-1	도	265	논현동	733-83	도	26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7	고잔동	500-2	잡	53	논현동	733-84	잡	5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8	고잔동	500-4	잡	35,382	논현동	733-85	잡	35,38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09	고잔동	500-5	잡	250	논현동	733-86	잡	25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0	고잔동	500	잡	651	논현동	733-87	잡	65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1	고잔동	502-1	답	2,368	논현동	733-88	답	2,36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2	고잔동	505-1	잡	2,155	논현동	733-89	잡	2,15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3	고잔동	505-2	답	1,306	논현동	733-90	답	1,30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4	고잔동	506-1	잡	2,017	논현동	733-91	잡	2,01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5	고잔동	506-2	잡	245	논현동	733-92	잡	24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6	고잔동	506-3	도	251	논현동	733-93	도	25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7	고잔동	507	잡	744	논현동	733-94	잡	74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8	고잔동	509-1	잡	704	논현동	733-95	잡	70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19	고잔동	509-2	잡	215	논현동	733-96	잡	21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0	고잔동	510-3	잡	16	논현동	733-97	잡	16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1	고잔동	510-6	잡	75	논현동	733-98	잡	75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2	고잔동	510	잡	1,410	논현동	733-99	잡	1,4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3	고잔동	512-9	답	125	논현동	733-100	답	12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4	고잔동	512-11	답	64	논현동	733-101	답	64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5	고잔동	512-25	답	119	논현동	733-102	답	119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6	고잔동	519-2	잡	2,122	논현동	733-103	잡	2,12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7	고잔동	519-3	임	124	논현동	733-104	임	12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8	고잔동	519-4	임	15,345	논현동	733-105	임	15,34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29	고잔동	519-5	잡	1,271	논현동	733-106	잡	1,27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0	고잔동	519-6	잡	490	논현동	733-107	잡	49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1	고잔동	519-13	잡	35	논현동	733-108	잡	35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2	고잔동	519-15	잡	9	논현동	733-109	잡	9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3	고잔동	519-16	임	42	논현동	733-110	임	42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4	고잔동	519-17	잡	14	논현동	733-111	잡	14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5	고잔동	519-20	도	657	논현동	733-112	도	65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6	고잔동	519-21	도	3,243	논현동	733-113	도	3,24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7	고잔동	519-22	임	3,095	논현동	733-114	임	3,09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8	고잔동	519-24	임	929	논현동	733-115	임	92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39	고잔동	519-32	잡	206	논현동	733-116	잡	206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0	고잔동	519-33	임	34	논현동	733-117	임	34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1	고잔동	519-34	잡	28	논현동	733-118	잡	28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2	고잔동	582	대	1,812	논현동	733-119	대	1,81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외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3	고잔동	583	잡	1,904	논현동	733-120	잡	1,90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4	고잔동	584	잡	4,330	논현동	733-121	잡	4,3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5	고잔동	585	잡	1,038	논현동	733-122	잡	1,03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6	고잔동	586-17	도	103	논현동	733-123	도	103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7	고잔동	586-19	대	263	논현동	733-124	대	26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8	고잔동	586-20	대	348	논현동	733-125	대	34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49	고잔동	586-21	대	113	논현동	733-126	대	11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0	고잔동	586-22	도	8	논현동	733-127	도	8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1	고잔동	587	대	850	논현동	733-128	대	85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2	고잔동	588	대	40	논현동	733-129	대	4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3	고잔동	591	잡	261,608	논현동	733-130	잡	261,608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의 1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4	고잔동	592	잡	5,014	논현동	733-131	잡	5,0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5	고잔동	593	도	40,845	논현동	733-132	도	40,845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6	고잔동	594	제	1,059	논현동	733-133	제	1,059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7	고잔동	595	유	16,555	논현동	733-134	유	16,55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8	고잔동	596	유	49,435	논현동	733-135	유	49,43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59	고잔동	974-1	잡	568	논현동	733-136	잡	56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0	고잔동	974-3	잡	727	논현동	733-137	잡	727	주식회사한화외 1인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1	고잔동	974-4	잡	52	논현동	733-138	잡	5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2	고잔동	974-5	잡	20	논현동	733-139	잡	2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3	고잔동	974-6	잡	4	논현동	733-140	잡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4	고잔동	974-7	잡	25	논현동	733-141	잡	2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5	고잔동	974-8	잡	125	논현동	733-142	잡	12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6	고잔동	974-9	잡	9	논현동	733-143	잡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167	고잔동	974-10	잡	1,426	논현동	733-144	잡	1,42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1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총계	필지수	167필지	면적	1,676,074	필지수	167필지	면적	1,676,07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6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고 · 열람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 3.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도로(서창동 중로3-69호선)

나. 입안내용

- 위 치 : 남동구 서창동 280번지 일원

- 내 용 : 기 정 ⇒ 중로3-69호선(L = 2,020m, B = 12~25m)

신설 ⇒ 중로1-가호선(L = 1,090m, B = 20~25m)

변경 ⇒ 중로3-69호선(L = 900m, B = 12m)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중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9	12-25	보조 간선	2,020	중로 1-168	서창동 284	일반 도로	-	인고제63호 (1995.4.6)
변경	중로	3	69	12	보조 간선	900	중로 1-325	시흥시계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1	가	20-25	보조 간선	1,090	중로 1-168	중로 1-325	일반 도로	-	-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69	중로 3-69	- 노선 변경 - 연장 : 2,020m→900m - 폭원 : 20-25m→12m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운연동간 미개설 중로 3-69호선의 도로 선형 변경 및 도로 확폭에 따른 노선 신설로 인한 노선연장 및 폭원 축소
-	중로 1-가	- 노선 신설 - 연장 : 1,090m - 폭원 : 20-25m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운연동간 미개설 중로 3-69호선의 도로 선형 변경 및 도로 확폭에 따른 노선 신설

2.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중로3-69호선)] 변경 결정
 - 위치 : 남동구 서창동 28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확폭(12m→20m) 및 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 나.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 공고로 대체)

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관계도서 : 게재 생략

3.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의견 제출 등

가. 제출기한 : 2011. 3.18 ~ 2011. 3.31(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

다. 제출의견 :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제반의견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토지조서는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집계표

구 분		면적 / 필지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하 천	구 거	과수원	잡종지	창 고	묘 지	공 원	제방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2,298.0	4,675.0	1,228.0	308.0	1,201.0	4,515.0	371.0	-	-	-	-	-	-	-
		27.0	11.0	3.0	1.0	5.0	6.0	1.0	-	-	-	-	-	-	-
	운연동	22,234.0	11,241.0	4,222.0	2,076.0	1,340.0	1,100.0	395.0	87.0	-	-	225.0	1,448.0	-	100.0
		102.0	46.0	22.0	12.0	4.0	8.0	3.0	1.0	-	-	1.0	4.0	-	1.0
합 계		34,532.0	15,916.0	5,450.0	2,384.0	2,541.0	5,615.0	766.0	87.0	-	-	225.0	1,448.0	-	100.0
		129.0	57.0	25.0	13.0	9.0	14.0	4.0	1.0	-	-	1.0	4.0	-	1.0

용지조서

연번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1/부	남동구 서창동	23-1	답	5,097.0	38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	1-1/부	남동구 서창동	23-2	답	1,071.0	51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	1-1/부	남동구 서창동	24	답	1,382.0	32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	1-1/부	남동구 서창동	33-1	전	1,815.0	7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5	1-1/부	남동구 서창동	35	전	3,600.0	73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6	1-1/부	남동구 서창동	36	전	1,917.0	23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7	1-1/부	남동구 서창동	37	전	3,421.0	1,30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8	1-1/부	남동구 서창동	38	전	1,091.0	29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9	1-1/부	남동구 서창동	39	전	919.0	39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0	1-1/부	남동구 서창동	280	대	330.0	30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1	1-1/부	남동구 서창동	280-3	임	161.0	47.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12	1-1/부	남동구 서창동	280-7	임	2,999.0	15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3	1-1/부	남동구 서창동	280-8	임	2,254.0	52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4	1-1/부	남동구 서창동	284	전	271.0	6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5	1-1/부	남동구 서창동	281-1	전	1,309.0	35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6	1-1/부	남동구 서창동	284-2	전	147.0	97.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17	1-1/부	남동구 서창동	281-3	도	446.0	11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8	1-1/부	남동구 서창동	229	전	2,259.0	56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9	1-1/부	남동구 서창동	229-1	도	177.0	70.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20	1-1/부	남동구 서창동	229-3	전	1,129.0	55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1	1-1/부	남동구 서창동	509	도	1,970.0	28.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22	1-1/부	남동구 서창동	508	천	22,149.0	371.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23	1-1/부	남동구 서창동	515	도	2,797.0	77.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24	1-1/부	남동구 서창동	516	도	2,714.0	1,620.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25	1-1/부	남동구 서창동	산8-2	임	13,388.0	35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6	27	남동구 서창동	산9	임	992.0	12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7		남동구 서창동	598	도	16,637.8	2,608.0	일반주거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서 창 동 소 계				26	92,442.8	12,280.0				
1	1-1/부	남동구 운연동	135-1	전	1,602.0	2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	1-1/부	남동구 운연동	135-6	답	123.0	7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	1-1/부	남동구 운연동	135-7	답	395.0	18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	1-1/전	남동구 운연동	135-8	전	18.0	1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5	1-1/전	남동구 운연동	135-9	답	142.0	14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6	1-1/부	남동구 운연동	136-1	답	1,153.0	417.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7	1-1/부	남동구 운연동	136-2	답	1,038.0	11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8	1-1/부	남동구 운연동	136-3	제	561.0	100.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9	1-1/부	남동구 운연동	136-4	천	460.0	30.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10	1-1/전	남동구 운연동	136-5	답	48.0	4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1	1-1/부	남동구 운연동	138	답	1,970.0	57.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2	1-1/부	남동구 운연동	139	답	2,330.0	21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3	1-1/부	남동구 운연동	139-1	답	1,267.0	62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4	1-1/부	남동구 운연동	140	전	784.0	8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5	1-1/부	남동구 운연동	140-1	전	571.0	36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6	1-1/부	남동구 운연동	141	전	730.0	7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7	1-1/부	남동구 운연동	141-1	묘	119.0	6.0	자연녹지지역	기획재정부	국	
18	1-1/부	남동구 운연동	141-2	전	526.0	387.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9	1-1/부	남동구 운연동	143	전	2,568.0	37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0	1-1/부	남동구 운연동	144-3	전	1,000.0	23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1	1-1/부	남동구 운연동	144-5	전	340.0	3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2	1-1/부	남동구 운연동	144-8	전	1,593.0	44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3	1-1/부	남동구 운연동	146-1	전	1,365.0	16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4	1-1/전	남동구 운연동	146-2	답	60.0	6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5	1-1/부	남동구 운연동	146-3	전	860.0	9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6	1-1/부	남동구 운연동	146-4	답	1,428.0	49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7	1-1/전	남동구 운연동	146-5	전	81.0	8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8	1-1/부	남동구 운연동	146-6	전	424.0	7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9	1-1/부	남동구 운연동	147-1	답	1,120.0	2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0	1-1/부	남동구 운연동	148	답	1,831.0	79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1	1-1/부	남동구 운연동	151	전	840.0	3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2	1-1/부	남동구 운연동	152	전	588.0	39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3	1-1/부	남동구 운연동	153	묘	3,035.0	66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4	1-1/부	남동구 운연동	154-2	전	2,116.0	94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5	1-1/부	남동구 운연동	154-3	전	1,233.0	32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6	1-1/부	남동구 운연동	154-4	전	1,164.0	32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7	1-1/부	남동구 운연동	156	전	512.0	20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8	1-1/부	남동구 운연동	157	묘	1,210.0	53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9	1-1/전	남동구 운연동	221-1	전	2.0	2.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40	1-1/부	남동구 운연동	229-5	답	30.0	9.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41	1-1/부	남동구 운연동	229-6	답	6.0	1.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42	1-1/부	남동구 운연동	229-7	답	1,012.0	3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3		남동구 운연동	229-9	답	195.0	119.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44	1-1/부	남동구 운연동	503	천	27,134.0	318.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45	1-1/부	남동구 운연동	523-1	도	2,248.0	264.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46	1-1/부	남동구 운연동	523-2	도	330.0	90.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47	1-1/부	남동구 운연동	523-4	도	1,128.0	62.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48		남동구 운연동	503-15	천	449.0	47.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49		남동구 운연동	221-3	답	1,330.0	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50	1-1/부	남동구 운연동	산89	묘	13,785.0	247.0	자연녹지지역	인천시	공	
51	1-1/부	남동구 운연동	산90	임	5,851.0	5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운 연 동 소 계				51	275,590.6	105,220				
합 계				77	368,033.4	228,270				

용지조서

연번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6	전	1,081.0	24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6-1	임	4,442.0	1,01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7-4	전	2,982.0	63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8-4	전	850.0	14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5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8-5	전	970.0	29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6	3-69/부	남동구 운연동	229-4	전	1,083.0	22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7		남동구 운연동	229-8	전	500.0	14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8	3-69/전	남동구 운연동	249-7	대	19.0	1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9	3-69/부	남동구 운연동	250	대	1,071.0	38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0	3-69/부	남동구 운연동	251	전	701.0	137.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1	3-69/전	남동구 운연동	253-1	대	72.0	7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2	3-69/부	남동구 운연동	254-3	대	163.0	124.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1인	공	
13	3-69/전	남동구 운연동	254-4	대	213.0	21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4	3-69/부	남동구 운연동	255-1	대	96.0	8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5	3-69/부	남동구 운연동	506	도	5,177.0	209.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16	3-69/부	남동구 운연동	산39	임	793.0	22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7		남동구 운연동	256-1	대	98.0	98.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18		남동구 운연동	283-7	대	371.0	341.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1인	공	

19		남동구 운연동	275	대	407.0	34.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0		남동구 운연동	276-1	대	60.0	60.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21		남동구 운연동	277	대	50.0	33.0	자연녹지지역	재무부	국	
22		남동구 운연동	278-1	답	287.0	26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3		남동구 운연동	273	대	615.0	61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4		남동구 운연동	279	전	1,398.0	30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5		남동구 운연동	272-3	답	132.0	13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6		남동구 운연동	280-4	창	1,230.0	22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27		남동구 운연동	510	구	5,062.0	87.0	자연녹지지역	농림부	국	
28		남동구 운연동	323-1	도	236.0	236.0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1인	공	
29		남동구 운연동	324-1	전	962.0	23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0		남동구 운연동	324-6	답	623.0	24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1		남동구 운연동	325-1	답	190.0	169.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2		남동구 운연동	507	도	3,016.0	161.0	자연녹지지역	건설부	국	
33		남동구 운연동	326	전	1,071.0	26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4		남동구 운연동	328-3	전	359.0	1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5		남동구 운연동	328	전	2,401.0	22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6		남동구 운연동	337	전	2,387.0	633.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7		남동구 운연동	336	전	664.0	236.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8		남동구 운연동	340	전	3,094.0	20.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9		남동구 운연동	343-8	전	892.0	147.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0		남동구 운연동	343-7	전	1,025.0	412.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41		남동구 운연동	343-3	임	327.0	39.0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2		남동구 운연동	343-6	전	892.0	257.0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3		남동구 운연동	347-3	전	1,017.0	735.0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4		남동구 운연동	346-2	도	55.0	55.0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5		남동구 운연동	355	전	377.0	164.0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6		남동구 운연동	354-3	전	3,054.0	226.0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7		남동구 운연동	354-2	전	5,580.0	399.0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8		남동구 운연동	344-4	도	41.0	23.0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49		남동구 운연동	354-1	전	777.0	312.0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사유지	
50		남동구 운연동	356-2	전	2,073.0	1.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51		남동구 운연동	356-1	전	3,299.0	135.0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운 연 동 소 계				51	64,335.0	11,705.0				
합 계				51	64,335.0	11,705.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등 지급범위 신설 확대(안 제2조)
- 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을 세분화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3조)
- 다. 포상금 지급한도 조문을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정비 함(안 제3조의2)

-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및 구성원을
현 직제명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마. 징수포상금 대장비치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제5항, 제7조)
- 사. 상위법령 개정예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과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금(이하 “세입금”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수액 중 1년차분”을 “채납액중 1년차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을 “채납액중 2년차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년도 채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채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4조 제목 “지급심사등”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과반수”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중전의 제1항부터 제3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표1에 따른다.
-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을 “포상금을 즉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년도”를 각각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징수포상금신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발신 : (인)

구 분		징수기간	건수	금 액			포상금	비 고
				합계	본세	가산금		
합 계								
소 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소 계								
숨 은 세 원 발	탈루·은닉 세 원							
	미 등 기							
창의적인 제안또는 제도개선	세 정 발 전							
	세 입 증 대							

* 첨 부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상금지급신청서

신 청 자			징 수 (세 원 발 굴) 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3.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생 략) 2. 버려진 세월과 숨은 세월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부과 구세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대하여는 ----- 지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월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금(이하 "세입금"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1. 과년도 <u>미수액 중 1년차분</u>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u>미수액 중 2년차 이상</u>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u>100분의 5</u> <u>< 신 설 ></u> 3. <u>납세의무 발생일</u>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u>징수한자</u>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u>< 신 설 ></u> <u>< 신 설 ></u>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u>체납액중 1년차의</u> ----- ----- ----- 2. ----- <u>체납액중 2년차의</u> ---- ----- <u>100분의 3</u>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u>100분의 5</u> 4. <u>납세의무성립일</u>----- ----- <u>징수</u> <u>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5</u> -- ----- -----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u>100분의 10</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 신 설 >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 300만원 제4조(지급심사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제4호 ----- -----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 ----- ---.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행정지원국장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재적위원 과반수 ----- 3분의 2 ----- ----- -----해당-----.

현행	개정안
제5조(대장비치) ① 구세입 부과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 신 설 >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u>년도</u>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 결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표 1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 제6조에 따른 ----- ----- 포상금을 즉시 ----- -----연 도 -----연도 -----.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해당 ----- -----.

현행	개정안
제8조(환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u>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u>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8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지방세기본법 시행령</u>」 제65조에 따른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38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수목(감나무 등 5종) 구입
- 나. 구입물품 :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22,930,000원
-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발주부서 지정일 (붙임 납품시방서 참조)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사. 납품조건 : 붙임 납품시방서 참조
-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1. 03. 18(금) 10:00 ~ 2011. 03. 23(수) 10: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03. 23(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도시공원과 임형섭 (☎032-453-2866)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조경수(묘목)생산 또는 판매를 등록한 자**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로서 우리구 물품내역 및 납품시방서에 의거 납품 가능한 자이며
- 나.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본 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입찰건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료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과 (032-453-2866 임형섭)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 (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1- 38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3.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2. 개정이유

2004년 문화원 설립당시 제정된 조례가 문화예술기반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가 없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원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나. 각 조(條) 위에 장(章)을 삽입하여 대분류로 구분

다. 조례 내용의 전반적 개정 : 11조 ➡ 4장 31조

- 문화원 조직 및 구성, 임원, 직원채용 등에 관한 사항
- 회계책임자 지정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교부,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구의 지도·감독 및 보고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32, FAX 453-21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문화원 설립당시 제정된 조례가 문화예술기반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가 없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원 지원·육성을 통해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명 개정
- 각 조(條) 위에 장(章)을 삽입하여 대분류로 구분
- 문화원 조직 및 구성,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조금 용도, 신청 및 교부, 회계처리 및 정산, 지도·감독
-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결산 및 보고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남동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인

2. 부위원장 : 2인

3. 이사 : 5인 이상 30인 이하(원장 포함)

4. 감사 : 2인

② 회원을 대표하여 25인 이하의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은 행정동 별 각 1명을 포함하여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표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제5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남동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총회에서 선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책무) ① 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부위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타 임원의 책무와 기능 등 세부사항은 문화원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 및 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 중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정관 등 개정) 문화원 정관 및 내부규정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책임자) 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 등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1. 재원운용관 : 원장

2. 재원출납원 : 사무국장

제10조(수입 및 회계관리 등) ①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 등 각각의 재원을 수입 종류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보조금 등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2조(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 ① 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여 받은 국유·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문화원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운용 관리

제21조(기금의 조성) ①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회원의 회비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 인출시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일부를 재 적립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남동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그 밖에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

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반환 등)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 출연금은 구에 반환하며,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장 보 칙

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문화원에 지원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1- 13 호

제가암관리사업 관련 소모품구입 전자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제가암관리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 나. 구입품목 및 구매수량 : 장루관 등 10개 품목(별지 구매내역 참조)
- 다. 기초금액 : 금8,710,200원(금팔백칠십일만이백원). 부가세포함
- 라. 견적방법 : 소액수의견적(총액)
-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1.03.16.(수) 15:00 ~ 2011. 03. 18.(금) 15:00
-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03.18(금) 16:00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입찰
집행관PC
- 사.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건강증진과 문정희(☎ 032-453-5094)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득한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 유지)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

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2개씩 추천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최저가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납품일시 및 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남동구보건소 지정장소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2008.07.07)] 등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보건소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제재 등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보건소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필요시 대면계약과 병행)

바.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2-453-5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16.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경리관

재가암 소모품 구매 물품내역서

(단위:원, 부가세포함)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합계			102	
1	장루관	44mm × 5매	BOX	7	
2	장루파우치	44mm × 10매	BOX	5	
3	장루관	57mm × 5매	BOX	50	
4	장루파우치	57mm × 10매	BOX	40	
5	장루관	70mm × 5매	BOX	7	
6	장루파우치	70mm × 10매	BOX	5	
7	원피스장루파우치	57mm × 10매	BOX	60	
8	피부보호연고	57g/BOX	BOX	24	
9	피부보호필름	50개/BOX	BOX	25	
10	장루용파우더	28.3g/BOX	BOX	15	